보도자료





2017년 12월 22일(금) 배포

2017년 12월 26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_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5일(월) 낮 12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과장: 배현정(044-200-4450)

담당: 김재홍 법무관(044-200-4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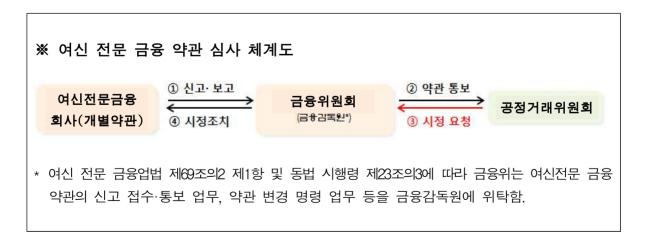
<u>공정위,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u>

- 리스 치량이 부당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등 5개 유형이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 (신용카드사)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 최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 차량의 과다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 절차 미비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 (**할부금융사**) 금융사가 대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 전문 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강화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 요청 배경

- □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 약관* 총 838건을 심사하여 5개 유형(신용카드사 4개, 할부금융사 1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 *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약관, 모바일카드 이용 약관, 주택 담보 대출 약관, 리스 금융 약관 등을 말함.
 - 이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리스료 1회 연체 만으로 사전 최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 차량의 과다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 절차 미비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 (할부금융사) 할부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2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신용카드사〉

1.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 최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자동차 리스 이용 약관】

(차량의 유지 관리 서비스) 월 <u>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u>하는 경우 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u>사전 통지없이</u>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리스 이용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 □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 이용 계약에 있어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 으로 **사전 통지없이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리스 차량의 과다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자동차 리스 약관】

(사고 감가 규정)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 사고 및 단순 교체 유무에 따라 <u>최초 차량 소비자 가격</u>에 아래의 부위별 사고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삼성카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평가항목	감가율	비고
앞휀다 교체이력, 도어 교체이력, 트렁크 교체 이력	각3%	1, 단순 교환 3%(본넷 제외), 패널 교환 5%(본넷 제외),
대시패널 교체 이력, 루프패널 교체 이력, 트렁크 플로어 패널 교체 이력	각7%	차체골격 교환 7%(루프 포함) 2. 수리 또는 교환 필요시 원상복구 후 감가부위 재평가하여 적용
필러 패널(A/B/C) 교체 이력, 인사이드 패널 교체 이력, 휠하우스 교체 이력, 사이드실 교체 이력	각 7%	
본넷교체이력	각 7%	
쿼터 패널 교체 이력, 프론트·리어 패널 교체 이력	각5%	
스크래치 등에 의한 도장 불량	각 부위별 1%	

- □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감가 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이 경우 감가 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 가격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 부위별 가치 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감가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의 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4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3.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자동차 리스 이용 약관】

(담보 제공) 제1항의 담보권의 존속 기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리스 이용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리스 이용자와 회사 간에 이 계약 이외에 거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담보는 법률 및 성질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리스 이용자의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사용 순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리스 이용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4. 약관 변경 시 통지를 푸시 알림으로 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모바일카드 이용 약관】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이메일,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u>앱푸시</u> 등을 통하여 통지하며, "회사"는 위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 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할부금융사〉

1. 보험 가입 대행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주택 담보 대출 약관】

(담보, 보험 등) "대출신청인"은 본 약정에 의한 제반 채무 및 장래 발생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개시일 전에 "회사"에게 제공하며, 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 □ 주택 담보 대출 계약에 있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대출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기대 효과·계획

- □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약관별 시정 요청 세부 내역





[붙임] 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

약관별 시정요청 조항

I. 신용카드사 (4개사)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	리스료 1회 연체시 사전최고 없이 서비 스를 중단하는 조항	자동차리스계약에서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이행
		을 사전최고한 후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 혹은 서비스 중단함이 타 당함에도, 리스료나 보험료 1회 연체 사실만으로 최고 없이 서비스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2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리스자동차 반환시 수리부위별 감가비 산정기준을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조항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원상회복의
		무를 부과하는 조항임
3	포괄담보권 설정 조항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
		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모든 거래와 관련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도록 한 조항은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약관 변경시 통지를	약관 변경시 고객 동의 의제조항에 의해 변경내용을 약관으로 편입하기 위
4	푸시 알림으로 하는	해서는 고객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푸시알림으로 약
	조항	관변경의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Ⅱ. 할부금융사 (1개사)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보험가입 대행조항	담보물건의 가치유지를 위한 보험가입의 선택권은 대출신청자인 고객에게 우선 보장되어야 함에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 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